

「2024 행정사 1차 객관식 민법총칙」 정오표

- 이패스행정사 이동건 -

p63

3번 정답 ③→정답 ④

p147

5번 ③도 복수정답

P154부터 159까지

4번 ①→④ 5번 ①→④ 6번 ②→① 7번 ⑤→① 8번 ③→② 9번 ③→⑤ 10번 ⑤→③ 13번 ②→①

(원고에는 정답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교열과정에서 발견못함)

P180 4번

문제 ③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~~없다.~~ → ~~있다.~~

해설 ③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~~있다.~~ → ~~없다.~~

P181 6번

③ 기한 도래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소급시킬 수 ~~없다~~→~~있다.~~

P186 1번

③ 기간을 일, 주, 월,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~~산입하지 아니한다~~→~~산입한다.~~

④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~~산입하지 아니한다~~→~~산입한다.~~

P189

3번

① 해설

기간의 기산점을 ~~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~~(157조)

→기간의 기산점을 ~~오는 7월 1일부터라고 하였으므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~~(157조)

「2024 행정사 2차 민법 계약법」기본서 정오표

- 이패스행정사 이동건 -

p45

(1)

제일 위

549조 해제와 손해배상

→

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해야 함

(2)

551조 [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]→549조 [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]

p69

밑에서 10째 줄

이 점이 특정물매매와 같다→이 점이 특정물매매와 다르다.

p173

2) 을의 중도금 송부와 계약해제

다만 다만 중도금 지급이 약정일로부터 1개월 10일 지체되었으므로 지연금액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.-->삭제 요망

「2024 행정사 2차 민법 계약법 판례 및 핵심이론」 정오표

- 이패스행정사 이동건 -

p90

판례사례 : 중도금 5천만원 → 5억원

p103

㉠ 완전물급부청구권 : 이 점이 특정물매매와 같다

→ ㉡ 완전물급부청구권 : 이 점이 특정물매매와 다르다.